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67

발의연월일: 2021. 6. 8.

발 의 자:이원욱·김민석·김수흥

김영주 · 김철민 · 백혜련

안호영 · 오영환 · 전용기

조승래 · 최종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함. 이에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제4조제6항·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 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여
	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
	<u>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u>
	<u>년을 말한다.</u>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⑤ (생 략)	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u>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u>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
	<u>여야 한다.</u>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의 질 향상) (생 략)	의 질 향상)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
	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
	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u>여야 한다.</u>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생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
	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